

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의안 번호	2942
----------	------

김재진 의원 (국민의힘, 영등포1)

- ☐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재진 위원입니다.
- ☐ 본 의원 외 31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한강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☐ 한강버스는 수상 교통사업으로 최근 선착장 등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으나, 선착장 시설 정의와 관리 규정이 미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 특수성을 반영하고 안전·편의,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
- ☐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‘한강버스 선착장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(안 제2조 제7호), 시장의 책무에 교통약자 대책 마련 및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(안 제3조 제5항, 제6항). 또한 사업자의 책무에 시설의 성능 저하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에 관한 성실 대응 규정을 신설하였으며(안 제4조 제2항), 협약내용에 사업자의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(안 제8조 제3항).
- 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